

의안번호	2215786
의 퇴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 계 번 호	25B565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u>7의2. “예비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營農)·영어(營漁)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신설></u>	의무규정
2	안 제11조의3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창업, 영농·영어 정착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취업지원 및 공동 영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경영체와의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정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의3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신설	

2. 상세 사유

□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안 제11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營農)·영어(營漁)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창업, 영농·영어 정착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시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현시점에서는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영농창업 및 정착, 법인설립 및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농업경영체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경영활성화_농업 경영·기술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영농 창업 및 정착, 법인설립 및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 설팅 지원	480	480	360	420	3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참고자료 1] 농어경영체 지원 사업 현황

※ [참고자료 2] 어업경영체 지원 사업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참고자료 1]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익기능 증진직불	전략작물직불(동계작물, 하계작물)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직불 금 지급	-	112,100	186,450	244,000	419,600
	전략작물직불(수급조절용 벼)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 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 하게 밥쌀로 전환	-	-	-	-	100,000
전략작물 산업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생 산비 절감,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 등 농 가소득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 농업경영체(농업법인) 관련 사업 : 교육·컨설 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	-	30,699	33,483	35,086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GAP안전성분석 지원사업)	GAP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 전성확보를 위해 토양·용수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지원	2,825	2,543	2,543	2,543	2,543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 생산지원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 원	27,427	26,004	27,125	31,125	31,125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160	240	280	240	200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 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 가림재배시설 지원	3,300	2,970	2,079	2,079	1,800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1,800	1,800	1,260	1,230	1,100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 업 육성을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2,790	2,753	1,460	1,414	1,27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농업인(농업법 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 영정상화 유도	323,210	290,700	233,700	182,400	182,400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맞춤형농지지원	고령농, 은퇴농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고,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지원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을 도모	782,131	844,915	1,206,060	1,113,440	1,807,690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농식품 산업 투자 촉진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40,000	40,000	55,000	55,000	50,0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1,990	1,990	4,300	6,500	9,64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교육 등을 연계 지원	38,899	55,106	95,724	113,662	112,301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영농창업 및 정착, 법인설립 및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480	480	360	420	385

[참고자료 1] 어업경영체 지원 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4,180	4,417	4,213	4,315	4,644
배합사료공장 운영비 지원		배합사료 및 어분 공장 운영비용자 지원	2,240	2,240	2,240	2,240	2,240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		어업인 등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소규모어가, 내국인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거주 등 소규모어가에게 직불금 지급	12,367	51,224	54,002	53,002	53,002
수산자원보호 직불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지원	11,934	11,934	15,239	15,239	15,239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25,597	27,865	34,474	41,015	47,973
경영이양 직불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유지	3,966	500	466	466	555
어업인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7,466	6,422	6,053	3,853	4,067
	연금보험료	어업인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6,844	6,963	6,963	6,963	8,177
수산장비구입지원(용자)		어업인 등에게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	2,850	2,850	1,600	1,600	-